

## 「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」 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업계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신규 제주여행 상품개발을 위하여 「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」 사업의 일환으로 ‘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9일  
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

### □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

○ 기 간: 공고일 ~ 11. 15. \*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
\*공고일 이전 내역 소급적용 불가 및 해당 기간 내 진행된 세일즈 한정

#### ※ 관련예시

- 세일즈 복귀일이 11.15.인 경우 지원대상 / 세일즈 복귀일이 11.16.인 경우 지원불가

○ 대 상

-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
- 제주도내 지점(영업점)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등

#### ※ 조건사항

- 관광진흥조례 의거 관광사업체에 한함 \*이외 논란이 있는 업체의 경우 내부논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
-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
- 관광숙박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

○ 주요내용: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세일즈 추진 비용 일부 지원

○ 지원항목: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, 숙박비, 차량임차비(부가세 제외 80% 지원)

- 지원한도: 회당 최대 1,200천원 / 업체당 최대 2,000천원 \*횟수제한 없음

- 지원조건

- 해외 세일즈 참여 현지 상담 업체 수는 세일즈 기간 이상 되어야 함

· 세일즈 기간 2일 미만 시 최소 2개소 이상 세일즈 진행

※ 관련예시 \*체류일: 인/아웃 일자를 제외한 체류 일수

- 02. 17. 해외 도착 - 02. 21. 국내 리턴 / 체류일 3일, 3개소 방문 → 지원 가능
- 02. 17. 해외 도착 - 02. 19. 국내 리턴 / 체류일 1일, 2개소 방문 → 지원 가능
- 02. 17. 해외 도착 - 02. 22. 국내 리턴 / 체류일 4일, 3개소 방문 → 지원 불가

·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 구성 불가 (컨소시엄 형식으로 출장 시 지원 불가)

· 차량임차비 신청 시 타 비용 (가이드, 입장료 등) 포함 불가  
(포함 시 차량임차비 항목 지원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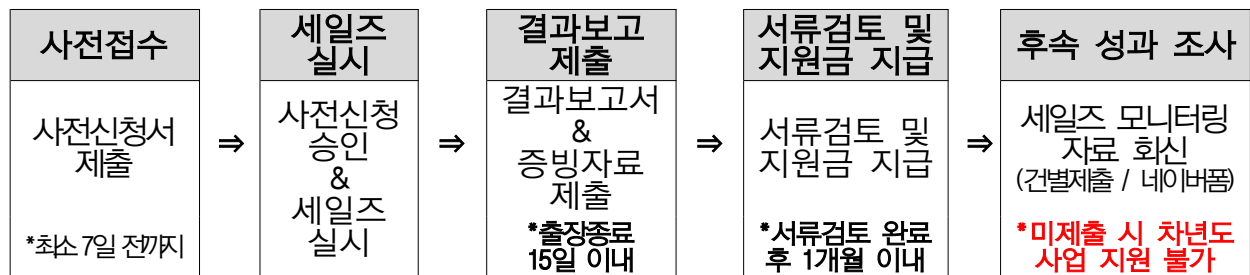
- 세부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|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| 공급가액의 80%<br>(자부담 20%, 부가세 미지원) | - 일반석에 한함<br>- 발권수수료 및 부가 서비스 제외<br>(좌석, 기내식, 수화물 등) |
| 숙박비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지 체류 숙박비   | 공급가액의 80%<br>(자부담 20%, 부가세 미지원) | - 공무원 여비규정 초과 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80%로 책정하여 지원               |
| 차량임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 현지 차량임차비 | 공급가액의 80%<br>(자부담 20%, 부가세 미지원) | - 임차계약서 필수<br>- 본인과 차량번호가 같이 나온 차량 전체사진 제출 필수        |
| ※숙박비의 경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<br>※지원금은 천 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<br>※외화 결제 시에는 결제 당일 현찰 살 때 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지원금 산정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숙박비(1박/1인) 지원 상한액

| 등급 |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| 공무원 여비규정 | 지원상한액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가  | 도쿄, 뉴욕, 런던, 홍콩, 싱가포르 등 | \$176    | \$140.8 |
| 나  | 일본, 타이완, 미국, 캐나다 등     | \$137    | \$109.6 |
| 다  | 중국, 인도네시아, 타이, 말레이시아 등 | \$106    | \$84.8  |
| 라  | 몽골, 베트남, 필리핀, 라오스 등    | \$81     | \$64.8  |

## ○ 지원절차



\*계약서, 협약서, 양해각서, 의향서 등 실적 증빙자료 미비 시 **지원불가**

\*후속점검은 추후 일괄조사 진행(네이버폼 등)

## ○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전접수<br>(출장 진행<br>최소 7일 전)  | - 사전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| 서식 1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계획서 1부                    | 서식 1-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현지 업체 정보 및 사전 업무 협의 내용 1부 | 홍보물, 홈페이지, 이메일<br>협의내용, 담당자 연락처 등<br>*업체별 제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사업자등록증 1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관광사업등록증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영업보증보험증서 1부(여행업에 한함)      | 공제기간이 세일즈(출장) 기간을 포함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신청<br>(출장 종료 후<br>15일 이내) | - 결과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| 서식 2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해외 세일즈 방문 보고서             | 서식 2-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서약서 1부                    | 서식 2-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세일즈 성과물 1부                | 계약서, 의향서, 협약서 등<br>*부재 시 지원불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법인통장사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항공료) 이티켓 1부              | 사전신청서 기준<br>출·도착일 정보가 동일해야 함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항공료) 실물 탑승권 1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항공료) 발권 영수증 1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숙박비) 예약확인서 1부            |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숙박비) 숙박확인서 1부            |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숙박비) 호텔 인보이스 1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숙박비)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   | 해외 현장 결제 시<br>해외사용승인내역 첨부 必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차량임차비) 차량 견적서 1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차량임차비) 임차계약서 1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차량임차비)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(차량임차비) 증빙사진 1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도내 지점(영업점)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의 경우 제주 영업소(사업장)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

※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

※사전신청서 접수 후 일정, 세일즈 지역 등이 변경될 경우 세일즈(출장) 시행 전 사전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. 이에따라 접수된 재신청 건은 신규 신청으로 처리하며, 기존 신청건은 취소되고, 지원 여부는 재신청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결정함

## □ 행정사항

### ○ 지원신청

- 접수방법: 이메일(jta2123@jta.or.kr) \*서류 일체 이메일로만 접수
- 문의처: 해외마케팅부 김세미 담당(T. 064-741-8777)

\*사전신청서 접수 후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수

### ○ 지원제외
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(유관기관·단체 포함)가 주관하는 유사한 내용으로 행·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(이중 지원 금지)
-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, 유관기관·단체의 행·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
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-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(향후 3년간 배제)

### ○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인정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음(공고에 명시된 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수)
- 지원금액 등에 논란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방침과 결정에 의함
-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나 신청업체 담당자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협회는 책임지지 않음
-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혜받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며, 향후 유사 지원사업 지급대상에서도 배제함 (향후 3년간 배제)
- 지원금 지급 일정, 지원금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신청 후 결과보고 미제출 또는 신청 포기, 부실정산 발생 시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및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

붙임 신청서식 각 1부. 끝.

[참고] 해외 박람회 및 설명회 등 연계 공동세일즈 지원

- 사업기간: 2026. 2. ~ 12.
- 모집방법: 건별 개별공고 실시
- 주요내용: 해외 주요 박람회·설명회 등 중대형 이벤트 연계 도내  
관광사업체 참여형 공동 세일즈 추진
- 2026 주요 해외 박람회 및 설명회(안)

| 연번 | 국가    | 행사명              | 일정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중국    | 마카오 MITE 박람회     | 4. 10. ~ 4. 12. |    |
| 2  | 싱가포르  | NATAS 여행박람회      | 미정 (8월중)        |    |
| 3  | 말레이시아 | MATTA 여행박람회      | 9. 4 - 9. 6     |    |
| 4  | 일본    | 도쿄 투어리즘 엑스포 박람회  | 9. 24. ~ 9. 27. |    |
| 5  | 대만    | 타이베이 ITF 국제여전    | 11. 6. ~ 11. 9. |    |
| 6  | 중국    | 상하이 CITM 국제여유박람회 | 미정 (11월중)       |    |

\*출장국가 특성 및 일정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·한도 등 탄력적 운영